**사단법인 밀알두레교육공동체 임원 입후보 등록 신청서**

|  |  |  |  |
| --- | --- | --- | --- |
| **입후보자명** |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이-메 일** |  |

1. 입후보 직책 : 이사 [ ], 감사 [ ] (입후보하고자 하는 직책에 O 표시)
2. 임원 자격 : 법인 정관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첨부 참조)
3. 입후보 등록 기간 : 2024 년 12 월 16 일 ~ 2024 년 12 월 20 일 17시 도착분까지
4. 등록 방법
* 원본 제출 (학교 행정실)
* 핸드폰 문자/카톡 등제 목 : 사원 가입 및 탈퇴 의사 확인, 총회 개최 안내
* <v:line from="71.63pt, 218.72pt" id="\_x233236272" strokeweight="2.83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533.72pt, 218.66pt"><v:stroke /></v:line>
	+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 사단법인 밀알두레교육공동체에서는 2014년 마감 및 2015년도 새해 활동을 준비면서 법인 사원 명부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사원은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당시의 학부모님들 중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을 위주로 하여 가입 서명을 받아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일부 사원들의 전출 및 사원으로서의 활동 미비 등이 있어, 법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여 사원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사원 가입 또는 탈퇴 의사를 별지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울러, 사단법인 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해서 참석하실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4년 12월 15일(월) 19:30
		- 장소 : 길벗채플
		- 주요 안건 : 1) 2014년도 결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 2015년도 사업 계획안
* 첨부 : 1. 사단법인 밀알두레교육공동체 가입 및 탈퇴 안내문 1부..
* 2. 사원 가입 신청서 1부.
* 3. 사원 탈퇴 신청서 1부.
* 4. 위임장 1부. 끝
* **[출처]** [2014년 사단법인 밀알두레교육공동체 총회 소집 안내 (밀알두레교육공동체-새기대카페)](http://cafe.naver.com/trinityedu/3904) |**작성자** [밀알두레학교 정기원](http://cafe.naver.com/trinityedu.cafe?iframe_url=/CafeMemberNetworkView.nhn%3Fm=view%26memberid=miraldurae)

 (문자로는 입후보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 + 신기원 (010-2895-3785)
	+ 임승현 (010-9585-5532)
	+ 염은석 (010-5520-1105)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밀알두레교육공동체의 차기 임원 선거에 입후보 등록하고자 합니다.

2024 년 12 월 일

입후보자 서명

**본인 소개서**

본인의 주요 경력 및 자기 소개 내용을 간단히 적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
| --- |
|  |

(첨부)

사단법인 밀알두레교육공동체 정관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22.12.19.>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2.12.1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2.12.19.>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2.12.19.>